

●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2-23호

전파법 제47조의2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2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파흡수율측정기준(전파연구소고시 제2010-45호, 2010.12.29.)을 다음과 같이 개정·고시합니다.

2012년 12월 6일

국립전파연구원장

###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전파법 제4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설비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의 인체 흡수율 측정을 위한 전자파 흡수율 측정기준(이하 “측정기준”이라 한다)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①이 고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전자파인체보호기준에서 규정한 전자파흡수율 기준의 적합성 평가에 적용한다.

②이 고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「전자파강도 및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」에서 정한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에 적용한다.

제3조(측정방법) ①전자파흡수율 측정을 위한 측정방법은 별표1의 「귀에 근접하여 사용하는 휴대용 무선설비의 전자파흡수율 측정절차」와 별표2의 「인체에 근접하여 사용하는 휴대용 무선설비의 전자파흡수율 측정절차」를 적용한다.

②국립전파연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전자파흡수율 측정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.

③제1항내지 제2항에서 규정하는 측정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방송통신 국가표준이나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단체표준, 국제전기기술위원회(IEC), 국제전기전자기술학회(IEEE) 등 표준화 기구에서 규정한 측정방법을 준용하여 적용할 수 있다.

제4조(재검토기한)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## **부 칙**(2005. 12. 5., 전파연구소고시 제2005-114호)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**부 칙**(2008. 6. 2., 전파연구소고시 제2008-16호)

제1조 (시행일)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(2010. 12. 29., 전파연구소고시 제2010-45호)

이 고시는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(2012. 12. 6.,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2-23호)

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